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# 시 보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 2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1. 9(금)

## 공 고

- 개간사업대상지선정사항공고.....1
- 압류자동차공매통지서공고.....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공고 제2015-38호

공 고

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-294호)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. .

남 원 시 장

- 1. 사 업 명 : 개 간
- 2. 위 치 :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산90번지
- 3. 선정 면적 : 2,720㎡(지적 : 8,132㎡)
- 4. 목 적 : 개 전
- 5. 사업예정기간 : 2015. 2. . ~ 2015. 2. 28.
- 6. 사업시행자 :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689-39 김영직
- 7. 열람 장소 : 남원시청 농정과(농촌개발담당) (☎ 063-620-6392)

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- 47호

# 공 시 송 달

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 『공매통지서』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5년 01월 09일

# 남 원 시 장

- 1. 서 류 의 명 칭 :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
- 2. 공 고 기 간 : 2015.01.09. ~ 2015.01.23
- 3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 내역과 같음
- 4. 서 류 의 내 용
  -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
  -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

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● 문의처 :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(063-620-6288) ●

붙 임

##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

성 명	주 소	사 유	자동차	비고
최*근	남원시 노송로	폐문부재	전북29모4161	
김*석	남원시 옥정5길	폐문부재	23노8576	
강*태	서울 노원구	폐문부재	07가3718	
박*자	경기 김포시	폐문부재	38라4487	
강*운	남원시 산내면	폐문부재	10나9548	